

『역사와 경계』 투고 및 편집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부산경남사학회의 학회지인 『역사와 경계』 (이하 학회지라고 약칭)의 투고·심사·편집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게재 내용]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는 글은 다음과 같다.

1. 논문
2. 비평논문, 논단, 연구동향 및 학술정보
3. 서평
4. 기타 학술 및 학회 활동에 관한 글

제3조 [투고 자격]

학회지에는 원칙적으로 회원만이 투고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4조 [투고문의 자격]

이미 다른 출판물에 발표된 글은 원칙적으로 학회지에 게재할 수 없다. 다만 해외출판물의 경우, 이미 출판되었더라도 그 중요성이 인정되면 번역·게재할 수 있다. 투고문은 학회지 최신호에 게재된 '원고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야 한다.

제5조 [학회지의 발행]

학회지의 간행은 연 4회로 한다. 간행일자는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 [투고문 심사]

1. 논문은 다음의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된다.
 - 1) 형식·분야·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1차 심사
 - 2) 내용의 학문성을 종합하여 게재 여부를 평가하는 2차 심사
2. 학회의 요청으로 집필된 논문이나 비평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 내부 심사로 대신할 수 있다.
3. 논문 및 비평논문 외의 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차 심사에 한한다.

제7조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학회지의 심사 및 편집 업무를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1. 편집위원회는 임원회와는 별도로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10명 내외로 구성된다.
2. 편집위원장은 학회 회장이 임원진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임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3. 편집위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대학의 전임교원이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경우로서, 학문적 역량과 업적이 뛰어난 사람으로 한다.
4.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成會)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메일을 통한 회의도 같은 효력을 갖는다.
6. 편집위원회는 연 4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위원장이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도 언제든지 개최될 수 있다.

제8조 [편집위원회의 활동]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투고문에 대한 1차 심사
2. 2차 심사를 맡을 심사위원의 선정

3. 2차 심사를 거친 투고문의 게재 여부 확정
4. 학회지에 실릴 글에 대한 기획과 집필 의뢰 및 심사
5. 기타 편집에 관한 사항

제9조 [논문의 심사절차]

1차 심사를 거친 논문(이하 비평논문 포함)은 별도로 위촉된 심사위원에 의해 2차 심사를 받는다.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결정한 각 논문의 해당분야 전문학자 3인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2. 심사위원의 위촉과 심사과정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10조 [논문의 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1. 심사위원은 체제와 논리의 명확성, 내용의 창의성, 자료 활용의 타당성, 종합적 결과 등을 판단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2. 심사위원은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다.
3. 특히 수정 및 게재 불가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위원은 반드시 그 이유를 자세히 명시하여야 한다.
4. 심사위원은 정해진 기일 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5. 동일 논문의 재심사는 1회에 한한다.

제11조 [논문 게재 판정]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처리한다.

제1심사위원	제2심사위원	제3심사위원	최종판정
A	A	A	게재
A	A	B	게재

A	A	C	수정 후 게재
A	B	B	수정 후 게재
B	B	B	수정 후 게재
A	A	D	수정 후 게재
A	B	C	수정 후 게재
A	B	D	수정 후 게재
A	C	C	수정 후 게재
B	B	C	수정 후 게재
B	C	C	수정 후 재심사
A	C	D	수정 후 재심사
B	B	D	수정 후 재심사
C	C	C	수정 후 재심사
A	D	D	게재 불가
B	C	D	게재 불가
B	D	D	게재 불가
C	C	D	게재 불가
C	D	D	게재 불가
D	D	D	게재 불가

* 수정 후 재심사의 경우,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12조 [심사결과의 통보]

편집위원회는 투고문의 학회지 게재 여부와 그에 따른 논평을 투고자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이의신청과 처리방법]

1. 투고자는 심사와 논문 게재 여부에 관하여 이의(異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에는 자세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의신청은 심사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해야만 한다.
2. 이의신청의 수락 여부와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4조 [심사료와 게재료]

1. 투고논문에 대하여 소정의 심사료와 게재료를 받을 수 있다.

2. 논문 서두에 연구비 지원을 받았다는 표시를 할 경우 대외지원비는 40만 원, 교내지원비는 30만 원, 그 밖에 전임 20만 원, 비전임 10만 원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5조 [저작권]

학회지에 게재된 모든 글에 대한 저작권은 부산경남사학회가 소유한다.

제16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제1차 개정의 효력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제2차 개정의 효력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